

해 양 수 산 부

훈 계 요 구

제 목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삼척시

관 련 자 강원도 ○○○본부 ○○○○과(전 삼척시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4. 3. 12.부터 2016. 4. 17.까지 삼척시 ○○○○과에 근무하면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인 사무장을 채용하여 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어업 외 소득 증대 및 어촌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 체험마을과 사무장 3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직무를 수행한 사무장에게 어촌체험마을에서 매월 12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고 있다.

삼척시에서는 [표 1]과 같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누계 2명을 채용하여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 체험활동 안내 지도, 홍보·마케팅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1]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현황

채용마을	사업연도	사무장 채용 현황			
		성 명	주 소	연 령	성 별
○○마을	2014	○○○(7~12월)	강원도 삼척시 ○○면	48	남
	2015	○○○	강원도 삼척시 ○○면	49	남

1.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공고 없이 채용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절차는 시장·군수가 채용대상자를 공고하고 채용신청자는 지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시장·군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하고, 어촌체험마을(어촌계), 사무장, 시장·군수 3자간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삼척시 ○○○○과는 채용대상자 공고 없이 ○○○○체험마을의 추천을 통해 사무장 ○○○(2014. 0. 00.)을 채용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사무장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사무장 급여 지급 부적정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급여 지급은 1인당 월 12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며, 급여 지급방법은 시·군에서 어촌체험마을의 협약서 및 채용상황, 4대 보험료 납부 및 퇴직급여 총당금 적립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어촌체험마을에 지원하되, 마지막 분기(월)는 집행확인 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촌체험마을에서는 협약에 따라 매월 보조금 통장에서 인터넷 बैं킹 활용하여 사무장에게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삼척시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을 위 [표 1]과 같이 ○○○○체험마을에서는 사무장 ○○○(2014. 7~2015. 12)을 채용하고, 삼척시장(갑), 사무장(을), ○○○○체험마을(병) 등 3자가 체결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병’은 ‘을’을 채용함에 있어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식사, 후생복지(보험 등) 등 편의를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을’에게 월 120만원의 채용비용(국고,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을 매월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삼척시는 마지막 분기(월)는 집행확인 후 정산하여 ○○○○마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어촌체험마을에서 채용한 사무장 급여 120만원을 매월 지급 여부를 사무장 급여통장 등을 확인 한 후 ○○○○체험마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삼척시는 2014년 12월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정산확인 없이 2014년 마지막 분기 보조금을 2014. 10. 29.에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으며, ○○○○체험마을에서는 [표 2]와 같이 채용한 사무장 ○○○(2014. 7~2015. 12)에 대해 급여를 매월 지급하지 않았다.

[표 2] ○○○○체험마을 사무장 급여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사무장 (채용기간)	월별 급여지급 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	○○○ (7~12월)	해 당 없 음						2014. 8			2015. 2		
2015	○○○	2015. 5		2015. 6		2015. 8		2015. 11		2015. 12		2016. 1	

3. 사무장 퇴직급여 충당금 미 적립 및 미 지급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사무장 채용비용 지원 조건으로 사무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은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4. 6. 24. 및 2014. 12. 31.에 삼척시장(갑), 사무장 ○○○(을), ○○○○체험마을 어촌계장(병) 등 3자가 체결한 협약서 제2조제3항에도 ‘병’은 ‘을’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복지를 위해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마을 부담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삼척시는 어촌체험마을에서 채용한 사무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마을부담으로 적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어촌체험마을

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체험마을에서는 사무장이 퇴직시 충당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삼척시는 어촌체험마을에서 채용한 사무장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¹⁹³⁾을 사업시행지침 및 협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 부담으로 적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장은

향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지침을 준수하는 등 국고보조금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93) 2014년도 및 2015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어촌체험마을 부담으로 적립하지 않았으며, 사무장 퇴직시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음